

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여부 구분

[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881호] (시행 2018. 9. 1.)기준



건축법시행령 [별표1]에 따른 건축물 용도분류		냉·난방 설치 여부	면적기준	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		
1. 단독주택	5. 문화 및 집회시설 중 (마목 : 동·식물원)		관계없음	X		
3. 제1종 근생 중 (아목 : 변전소, 도시가스배관시설, 정수장, 양수장)	13. 운동시설	16. 위락시설	설치	냉방 또는 난방면적의 합계가 500㎡ 이상	●	
17. 공장	18. 창고시설	19.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	20. 자동차관련시설	설치	냉방 또는 난방면적의 합계가 500㎡ 미만	X
21.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	22. 자원순환 관령시설	23. 교정 및 군사시설	24. 방송통신시설	미설치	관계없음	X
25. 발전시설	26. 묘지관련시설	27. 관광휴게시설				
2. 공동주택 (30세대 미만 공동주택)	3. 제1종 근생 (아목 제외)	4. 제2종 근생	5. 문화·집회시설 (마목 제외)	냉·난방 설치 여부와 관계없음	연면적의 합계가 500㎡ 이상	●
6. 종교시설	7. 판매시설	8. 운수시설	9. 의료시설		연면적의 합계가 500㎡ 미만	X
10. 교육연구시설	11. 노유자시설	12. 수련시설	14. 업무시설			
15. 숙박시설	28. 장례시설	29. 야영장시설				
2. 공동주택 중 30세대 이상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은 "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"에 따른 『에너지절약계획서』 제출 대신 "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"에 따른 『친환경주택 에너지 성능절약 계획서』 제출대상임				-	X	

■ 에너지절약계획서 세부구성 제출범위

구분	내용		에너지절약계획서	에너지절약계획 설계검토서			
			일반사항	1. 의무사항	2. 에너지성능지표 (EPI)	3. 소요량평가서 (ECO2-OD)	
제4조의 제2호	공공건축물 외	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+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시	●	●	X	X	
	공공건축물 (신축 및 별도증축)	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++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시					
제4조의 제4호	증축 / 용도변경 /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(해당 연면적의 합계 500㎡ 이상)		●	●	X	X	
	별동 증축 (증축 연면적의 합계 500㎡ 이상)		●	●	●	▲	
	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%이상 증축이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,000㎡ 이상인 경우		●	●	●	X	
제4조의 제5호	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및 비주거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가	500㎡이상 2,000㎡미만인 경우	●	●	X	X	
			개별동의 연면적이 500㎡ 미만인 경우	●	●	●	▲
			개별동의 연면적이 500㎡ 이상인 경우	●	●	●	▲
	2,000㎡이상인 경우	개별동의 연면적과 무관	●	●	●	▲	
제4조의 제6호	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/ 용도변경 /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(연면적의 합계 500㎡ 이상)		●	X	X	X	
제4조의 제8호 및 제21조	① 연면적 합계가 3,000㎡이상 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(민간·공공)	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결과	(민간) 200kWh/㎡ 미만인 경우 (공공) 140kWh/㎡ 미만인 경우	●	●	X	●
			(민간) 200kWh/㎡ 이상인 경우 (공공) 140kWh/㎡ 이상인 경우	●	●	●	●
	①을 제외한 연면적 합계가 500㎡이상 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	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EPI 제출	●	●	●	●	
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는 제21조 평가대상에 따름</li> <li>대수선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아님 (단, 리모델링은 증축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제출대상이 될 수 있음)</li> <li>상기표는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881호)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의 최종판단은 허가권자에게 있음.</li> </ul>						